

新・舊條文對備表

現 行	改 正 (案)
<p>第1條(目的)(생략)</p> <p>第2條(監査) ①議會는 구의 行政事務에 관하여 <u>本會議 議決로</u> 감사특별위원회(이하 “감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<u>감사를 행한다.</u></p> <p>②영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計劃書에는 감사일정, 감사위원회의 편성, 감사요령,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	<p>第1條(目的)(현행과 같음)</p> <p>第2條(監査) ①議會는 <u>每年 定期會議 會期中 3일 이내에</u>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<u>所管 常任委員會別로 監査를 행한다.</u> 다만 <u>本會議의 議決로</u>.....<u>감사를 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영 第17條의2의 規定에 의한 監査計劃書는 <u>常任委員會 또는 監査委員會가 運營委員會와 협의하여 적성하며</u>....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<p>第3條(調査) ①(생략)</p> <p>②第1項의 調査는 조사의 <u>목적, 조사할 사안의 범위등을</u>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<u>書面으로</u> 발의 하여야 한다.</p> <p>③議長은 第2項의 발의가 議決되면 지체 없이 <u>本會議 議決로 調査特別委員會(이하 “調査委員會”라 한다)를 구성한다.</u></p> <p>④(생략)</p>	<p>第3條(調査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第1項의 調査는 調査의 <u>범위와 調査를 시행할 委員會등을</u> 기재하여 발의.....</p> <p>③議長은 第2項의 발의가 議決되면 지체 없이 <u>本會議 議決로 調査를 시행할 特別委員會를 구성하거나 해당 常任委員會에 회부하여 調査를 시행할 委員會(이하 “調査委員會”라 한다)를 확정하다.</u></p> <p>④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
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(안)

○ 개정이유

1992.12.31. 法律第4,464호로 改正公布된
地方自治法 第50條에 의거 “서울특별시마
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
범위에관한조례”를 개정하고자 함.

- 주요골자
 - 常任委員會에도 關係公務員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함.
- 근거법령
 地方自治法 第50條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있는
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 참석하여 답변할수있는관
 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
 정한다.
 第1條중 “特別委員會”를 “委員會”라 한다.

附 則

이 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시행한다.

新·舊條文對備表

現 行	改 正 (案)
第1條(目的) 이 條例는 地方自治法(이하 “法”이라 한다)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(이하 “議會”라 한다) 또는 特別委員會(이하 “委員會”라 한다)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關係公務員의 범위를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.	第1條(目的)
第2條(범위) (생략)	第2條(범위)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
 조례개정조례(안)

- 개정이유
 1991.12.31. 法律 第4,464호로 改正 公布된 地方自治法第50條의 規定에 의거 自治區議會에도 常任委員會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“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”를 改正하여 相關사항을 정비하려 함.
- 주요골자
 - 常任委員會의 설치와 위원정수를 규정 (第2條)
 - 운영위원회- 9명
 - 총무재무위원회-10명
 - 시민보건위원회-10명
 - 도시건설위원회-10명
 - 常任委員과 常任委員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함.(第5條 및 第6條)
 - 議會는 特정한 案件를 審査하기 위하여 特別委員會를 들 수 있음.(第7條)
- 관련법규

地方自治法 第50條 및 第54條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
 조례개정조례(안)

“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”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안
 第1條(目的) 이 조례는 地方自治法 第54條의 規定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(이하 “議會”라 한다.)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第2條(常任委員會의 設置) 議會에 두는 常任委員會와 그 委員定數는 다음과 같다.
 1. 運營委員會- 9명
 2. 總務財務委員會-10명
 3. 市民保健委員會-10명
 4. 都市建設委員會-10명
 第3條(常任委員會의 職務와 그 所管) ①常任委員會는 그 所管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는 職務를 행한다.